

울산지방법원 2020. 4. 7 선고 2019가단756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대한민국

변론 종결 2020. 3. 24

판결 선고 2020. 4. 7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①울산 중구 B 도로 38㎡(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) 중 31㎡에관하여,②울산 중구 C 도로 11㎡(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)에 관하여 각 이 법원1973. 12. 27. 접수 제2800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울산시 중구 D 도로의 분할 등 연혁 1) 피고는 1973. 12. 27. 울산시 중구 D 도로 6,106㎡ 에 관하여 이 법원 같은 날 접수제280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2) 울산시 중구 D 도로 6,106㎡는 1993. 7월경 이 가운데 ①도로 1㎡가 E로, ②도로 253㎡가 F로, ③도로 80㎡가 G으로, ④도로 3,703㎡가 H로, ⑤도로 643㎡가 I로, ⑥이 사건 제1토지로, ⑦이 사건 제2토지로, ⑧도로 557㎡가 그로 분할되어 도로 820㎡가 되었다.

3) ①울산시 중구 E 도로 1㎡, ②F 도로 253㎡, ③G 도로 80㎡, ④I 도로 643㎡, ⑤ J 도로 557㎡는 모두 1994. 5. 30. 구획정리되어 폐쇄되었다.

4) 울산시 중구 D 도로 820㎡는 2005. 2월경 도로 528㎡가 K으로 분할되어 도로 192㎡가 되었다.

나. 울산시 중구 L 임야의 분할 등 연혁 1) 원고는 1984. 7. 11. 울산시 L 임야 24,595㎡(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) 에관하여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9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울산시 L 임야 24,595㎡는 1993. 9월경 이 가운데 임야 396㎡가 M로 분할되어 L 임야 24,199㎡가 되었다.

3) 울산시 L 임야 24,199㎡는 1994. 12월경 이 가운데 ①임야 5,035㎡가 N로, ②임 야 2,712㎡가 O으로 분할되어 임야 16,452㎡가 되었다.

4) 울산시 O임야 2,712㎡는 2007. 5. 16. 토지형질변경준공으로 P 임야 2,670㎡로 등록전환되어 말소되었다.

5) 울산시 P 임야 2,670㎡는 2007. 5. 16. 지적정리로 ①P 임야 996㎡, ②Q 임야 86㎡와 ③R 임야 1,588㎡로 정리되었다.

6) 울산시 Q 임야 86㎡는 2007. 5. 16. 지적정리로 Q 도로 86㎡로 정리되었다, [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 1내지 11호증(가지번호 포함),을 제 1내지1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형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

가. 울산시는 1991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일원에서 이주택지를 조성하 는 과정에서 울산 중구 P 임야 2,670㎡를 등록전환하면서 불법적으로 그 가운데 42㎡를 줄여서 이 42㎡를 그 이전까지 실제로는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제1토지 중 31㎡와이 사건 제2토지로 만들거나 이들에

포함시켜 피고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.

나. 이 사건 제1토지 중 31㎡와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31㎡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등기이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모두 말소하여 주어야 한다,

3.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 피고가 지적공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P 임야 2,670㎡ 중 42㎡ 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31㎡ 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훔쳐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, 이 사건 제1토지 중 31㎡와 이 사건 제2토지가 원고 소유의 울산중구 p 임야 2,670㎡ 중 42㎡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.

나.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P 임야 2,670㎡ 와 이 사건 제1토지 중 31㎡ 와 이 사건 제2토지는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토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욱 상식에 부합한다고도 하겠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명한